

제 367호

1973. 5. 1.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시장 양 백 식

편집 : 공보실장 김진호

전화 75-7834

인쇄 :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

전화 75-6444 · 6090

시 보

차 례

◎ 조 제	
제 766호	서울특별시공원조례중 개정조례 3
제 767호	서울특별시자동차등록번호표교부수수료 징수조례 5
◎ 고 시	
제 64호	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및 실시계획인가 일부변경 5
◎ 공 고	
제 85호	서울특별시수지구역지정 6
◎ 사 령 7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1627

조 례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
시공원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
한다.

서울특별시시장 양 대 식
1973년 4월 30일

◎서울특별시조례 제 766 호

서울특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
서울특별시공원조례중 다음과 같이
개정한다.

제 1 조중 "점용료" 나옴에 "등의"
를 삽입한다.

별표 1의 2

입장료 및 사용료(어린이대공원)

제 4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제 4 조 (입장료 및 사용료) 시장은
공원에 입장하거나 공원시설을 사용
하는 자로부터 별표 1에 의한 입장
료 및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.
다만 어린이대공원의 입장료 및 사용
료는 별표 1의 2에 의한다.
제 7 조에 단서할 다음과 같이 신설
한다. 다만 어린이대공원의 사용
료는 별표 4에 의한다.
별표 1의 2 및 별표 4를 각각 별거
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1973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종 별	구 분	금 액	비 고
입 장 료	개 인	100 원	1 회에 대하여 아동원 6세 - 13세 이내를 단합. 단체는 30인이상을 단합.
	단 체	70 원	
어 린 이 사 용 료	대 인	300 원	
	아 동	200 원	
주 차 장	버 스	시간 당 50 원	60 분 이내 주차는 1 시장으로 제한함.
	승 용 차	" 30 원	
	2 륜 차	" 20 원	
요 마 지 동 차 들 이		30 원	1 회에 대하여, 1 회는 10 분이 내로 함.
휴 모 차 사 용		100 원	1 회에 대하여

별표 4

비공원관리청의사용료 (어린이대공원)

종 별	구 분	금 액	비 고
등 이 등 산	대 인 아 동	50 원 이내 30 "	1 회에대 하여, 아동은 4 세 ~ 14 세 이내로함.
하 활 차	대 인 아 동	100 " 50 "	" "
청 룡 열 차	대 인 아 동	100 " 50 "	" "
미 니 배 일	대 인 아 동	100 " 50 "	" "
번 개 차	대 인 아 동	100 " 50 "	" "
두 께 비 차	대 인 아 동	100 " 50 "	" "
아 기 차	아 동	30 "	"
보 마 기 차	대 인 아 동	60 " 30 "	" "
평 이 놀 이	대 인 아 동	60 " 30 "	" "
바 즈 카 표	대 인 아 동	60 " 30 "	" "
날 로 켓 트		무 료	
회 건 칩		"	
풍 자 놀 이		"	
회 건 그 비		"	
요 술 집			

국무총리의승인을 얻어 제정 한 서울특별시 자동차 등록번호표 교부수수료 징수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 장 양택 생
1973년 4월 30일

◎ 서울특별시 조례 제 767 호

서울특별시 자동차등록번호표 교부수수료징수조례

제 1 조 (목적) 이 조례는 도로용수차량(이하 "법"이라한다) 제 23 조의규정에의하여 서울특별시(이하 "시"라한다)의 자동차등록번호표의 교부출대행함에 있어 등록 제 25 조 제 1 항의 규정에의한 교부수수료(이하 "수수료"라한다)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수수료액) ① 수수료는 시장이 법제 25 조제 1 항의 규정에의하여 결정된 금액을 번호표의교부물·신청하는자로부터 징수한다.

② 시장은 전항의 수수료액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이를고시하여야 한다. 이를 변경한때에도 또한같다.

제 3 조 (징수) 수수료는 번호표의 교부신청시에 발부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.

제 4 조 (시행규칙)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이 조례는 197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

고 시

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11 호

일남의두백지조각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의안심사규정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21 호 (65.3.20) 로 실시계획의안심사규정(안) (국문) 51 의 16 편지 일남의 두백지 조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2 조제

제 13 조의 규정에의한 시설 및 시설승인비정과 총법제 25 조의 규정에의한 실시계획 변경을 인가하되 건설부 고시제 123 호 (73.4.4)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역 시정공사

9-6 제 367 호 시 보 1973.5.1

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1973년 4. 28일
서울특별시

기.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구역변경

구분	사업명	위	치	면	적	비	고
기정	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	시내영등포구화곡동 5, 16필	69,640	평			
변경			67,686	평		공사불능지	1954명계획

나. 아 동 공 원

명칭	위	치	면	적	비	고
화곡제 1 아동공원	시내영등포구화곡동산 41-2 928	(281 평)			도립삼에민고시된	
화곡제 2 아동공원	화곡동산 29 812	(255 평)			시설을 금반고시	
화곡제 3 아동공원	화곡동산 28-1 944	(286 평)			란	

다. 지 설 녹 지

명칭	위	치	면	적	비	고
화곡시설녹지	시내영등포구화곡동산 41-2	5884	미터		도립삼에민고시된	시설을금반고시함

공 고

① 서울특별시공고 제 85 호
서울특별시주거지역지정
서울특별시 주거지역간 주거구역지정
을 건축법 제 39 조 제 1 항 제 3 호의

규정의의하여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.
관계도서는 당시 도시계획국 건축과
및 영등포구청 건축과에 비치하고
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.

1973. 4.

서울특별시

주 거 구 역 지 정 조 서				
구 분	구 역 번	주거지역면적	주 거 지 역 중 주 거 구 역 면 적	금회 지정면적
9	영동포구역	77.42 ㉮	53.03 ㉮	신도림동자재 2.00 ㉮
<p>1. 위 지정된 주거구역안에서 공지 규정에 따른다.</p> <p>비율은 10분의 6 이내임.</p> <p>2. 주거구역이 도시계획법에 규정한 용도지역 변경이 있을시는 주거구 지구에 적용될 때에는 동법 제한 역 적용을 제외한다.</p> <p>3. 주거구역중 추후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 변경이 있을시는 주거구 역 적용을 제외한다.</p>				
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display: inline-block;">사 령</div>				
© 1973.4.28.				
성 명	부 서	직 급	발 령 사 항	
김 지 척	순 박 본 부	조건부지방조항원		
석 기 홍	"	"		
김 대 석	"	"		
이 재 유	"	"		
이 재 옥	"	"		
정 개 천	"	"		
김 광 수	"	"		
심 정 수	"	"		
노 병 숙	"	"		
홍 영 식	"	"		
박 영 득	"	"		
위 용 환	"	"		
이 경 우	"	"		
박 황	"	"		
정 재 명	"	"		

성 명	부 서	직 급	발령 사항
총 일성	소빙큰부	조건부지방소방원	
달분규	"	"	
이창열	"	"	
우세관	"	"	
심종준	"	"	
김시봉	"	"	
구본관	"	"	
정우권	"	"	
이원섭	"	"	
유영섭	"	"	
이재상	"	"	
심홍건	"	"	
신영관	"	"	
오인준	"	"	
이종욱	"	"	
강승종	"	"	
박찬영	"	"	
이상기	"	"	
전종술	"	"	
김병환	"	"	
남승용	"	"	
우영열	"	"	
우재순	"	"	
우홍섭	"	"	
김상수	"	"	
김기환	"	"	

<p>경 북 지방행정주사 환전식</p> <p>서울특별시 건입을 명함.</p> <p>지방행정주사에 입함.</p> <p>7호봉을 급함.</p> <p>중로구 근무를 명함.</p>	<p>● 1973.4.30.</p> <p>성복구(2.28 한파전중) 지방행정주사보</p> <p>중구파견 근무를 명함.</p> <p>성복구(2.28 한파전중) 지방행정주사보</p> <p>중구파견 근무를 명함.</p>	<p>윤시영</p> <p>이수원</p>
<p>서울특별시</p>		